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지향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7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3일
발 의 자: 김지향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경훈, 김용일, 김춘곤,
남창진, 민병주, 박춘선,
박철성, 서상열, 송경택,
유정인, 이봉준, 이영실,
이종태, 최민규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면, 교육, 훈련, 징계 등 인사전반에 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한 사무위임 규정을 삭제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한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, 별정직·임기제 공무원 등의 임용권을 삭제함(안 별표 5 □ 행정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□ 행정국 표 주관부서 중 인사과란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